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778 발의연월일: 2024. 7. 16.

발 의 자:서영교・박희승・임오경

박지원 • 이훈기 • 윤준병

위성곤 · 임호선 · 이해식

한정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해당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임.

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현행의 과세특례가 종료될 경우, 노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 음.

이에 노동조합이 그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·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(안 제26조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6조 중 "2024년 12월 31일"을 "2027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노동조합에 대한 감면)	제26조(노동조합에 대한 감면)
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	
법」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	
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	
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(수	
익사업용 부동산은 제외한다.	
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대하	
여는 취득세를, 과세기준일 현	
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	
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	
를 각각 <u>2024년 12월 31일</u> 까지	<u>2027년 12월 31일</u>
면제한다.	